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1가단1229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김정원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3. 1. 27.

주 문

1.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2. 체결된 증여 계약을 17,714,09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714,0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양수금채권의 발생

- 1) D은 2000년경 E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였다.
- 2) E 주식회사의 D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은 F 유한회사, 주식회사 G, H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D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 3) 한편 주식회사 G은 2010. 2. 17.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9. 1. “D은 주식회사 G에 12,376,856원 및 그 중 4,192,000원에 대하여 2010.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652375 사건)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0. 9. 확정되었다.
- 4) 2021. 6. 8. 기준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잔액은 17,714,091원(= 원금 1,176,307원 + 이자 16,537,784원)이다.

나. 부동산 권리관계의 변동

- 1) D은 부친 망 I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6. 28. 단독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딸인 피고 B에게 2017. 6. 2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은 2017. 6.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3) D의 누나인 피고 C는 2017. 7. 3. J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163,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간의 2018. 11. 16.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1. 23.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의 무자력

1)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전남 장흥군 K 대 449㎡ 등 부동산 4건(이하 '이 사건 각 관련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도 망 I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이 사건 각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서도 피고 B에게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2017. 6.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D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외에 추가로 소유한 부동산은 없었다.

3) D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위 가.항 기재 채무를 비롯하여 약 66,000,000원이 넘는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관련 사건의 판단

1) D의 다른 채권자인 L단체(이하 'L단체'라고 한다)도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 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L단체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해당 사건을 이하 'L단체 관련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2) L단체 관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L단체의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이 사건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성은 인정되나, 피고 C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증여의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L단체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10. 27. 선고 2019가단6271 사건).

3) 그런데 L단체 관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전득자인 피고 C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을 L단체의 피보전채권액 28,348,052원1)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는 L단체에 28,348,05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나69911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D에 대하여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최종 양도받은 양수금 채권(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D이 자신의 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B과 그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선의 항변

1)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상속받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도 D의 채무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단지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이후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고

떠난다고 하여 피고 C가 D로부터 대출금을 인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전득자인 피고 C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라 함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득자인 위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수익자인 피고 B은 D의 자녀이고, 전득자인 피고 C는 D의 누나로서 D과 매우 가까운 인적 관계에 있다.

② 피고 C는 이 사건에서 “D이 2017. 7.경 피고 C에게 ‘자신은 신용상의 문제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딸인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피고 B은 나이가 어려서 대출이 어려우니 피고 C에게 담보대출을 위한 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1. 7. 19.자 준비서면 제2면 등), 실제로 2017. 7.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가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는바, 피고 C는 전득행위(피고 B과의 이 사건 매매

계약일인 2018. 11. 16.) 이전부터 이미 D의 재정 상황이나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 피고 C는, 피고 C 등 상속인들이 D의 재산 상황을 알았다면 D에게 단독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C의 약의 여부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일(2017. 1. 29.) 이후인 전득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의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 C의 약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2).

④ 또한 피고 C는, D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대출받아 준 차용금을 D로부터 인수하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대출 실행 여부 및 대출금의 전달 여부, 이 사건 매매 당시 대출금의 잔존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당시 시가 등 그러한 주장의 당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결국 D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3) 피고 B이 이 사건 증여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제3자인 J조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원상회복

방법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배상에 의함이 상당하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책임재산) 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현재 공동담보 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L단체 관련 사건에서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최소한 위 채권최고액 163,000,000원 이상임이 추인되고, 원고가 구하는 2021. 6. 8.까지의 피보전채권액의 합계 17,714,091원이 위 공동담보 가액보다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 계약은 17,714,09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 B와 전득자인 피고 C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7,714,0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진호

부동산 목록

1. 전라남도 장흥군 전 754㎡
2. 전라남도 장흥군 목장용지 1884㎡
3. 전라남도 장흥군 동
 경량철골조 스토리지봉 단층 축사 126㎡
 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축사 및 퇴비사 195.3㎡
 부속건물 기타강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창고 145.8㎡
4. 전라남도 장흥군 동
 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축사 및 퇴비사 720㎡ 끝.

1) 위 사건에서 확인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금액은 207,802,000원이었는바, 가액배상의 범위는 공동담보 가액에 해당하는 위 평가금액보다 적은 L단체의 피보전채권액 범위로 한정하였다.

2) L단체 관련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위에 관하여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오던 D이 부동산 관련 채권·채무를 정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인들 간에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하였다.